

5.31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 대책위원회
제 1 차 실 무 위 원 회 의
2006. 4. 21.(금) 14:00

회 의 자 료

5.31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 대책위원회

일 정

- 일 자 : 2006. 4. 21.(금) 14:00
- 장 소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의실

1. 5.31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 대책 실무위원 소개
2. 5.31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 대책위원회 경과보고
3. 참여단체별(분야별) 의제발표
4. 1차 공통의제 선정
5. 전체일정 및 기타논의

5.31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 대책위원회 경과보고

(유관단체장 회의록 참조)

5. 31. 지방선거 사회복지정책 공익화를 위한 유관단체장 회의록

□ 개최개요

- 일 시 : 2006년 3월 29일(수) 14:00
- 장 소 : 유당마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 참석인원 : 9단체 13명 참석 (가나다순정리)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팀 장	유 철 호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장	박 상 용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사무국장	김 선 구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 장	황 명 준 외 1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 장	김 문 동 외 3인
경기도아동복지시설연합회	실 장	한 경 희
경기도청소년상담센터	실 장	유 순 덕
경기도사회복지행정동우회	회 장	김 정 길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위원장	이 선 영

○ 진 행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14:00 - 14:10	○ 개회 및 참석단체장 상견례	유당마을	
14:10 - 15:40	○ 경기복지의제 및 사회복지정책토론회 관련 사회복지단체장 회의		
15:40 -	○ 폐회		

○ 사 회 : 김종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 인사말씀(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김문동 회장)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맞이하여 경기도지사후보 초청 사회복지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공사간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린다면서 금 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의 사회복지를 대변하기 위한 대표 분들이라며, 경기도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이며 또한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기지역 사회복지발전에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며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다.

회 의 록

제목	(가칭) 5.31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 대책위원회 구성관련 참여단체장 회의		
일시	2006. 3. 29.(금) 14:00 ~ 15:40	장소	유당마을 1층 프리젠테이션룸
회의내용	<p>※자유토론시 핵심거론 내용요약</p> <p>1. 대책위원회 구성부분 각종단체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야별로 사회복지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모였다면서,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마련과 함께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회복지발전에 총력을 기하고자 금일 참석한 사회복지 직능 및 유관단체가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다.</p> <p>2. 예산부분 5.31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합의함에 따라 공동주관단체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각100만원, 참여단체간 각30만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다.</p> <p>3. 사회복지정책 제시의 필요성과 사회복지 유권자 파악 사회복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여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현실적인 사회복지 유권자 범위와 규모(분야별 시설기관 수)를 제시하여 관심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하다.</p> <p>4. 분야별 의제수립 및 실무위원회 구성 관련 사회복지 분야별 의제를 준비하되 사회복지의 대표적 공통의제를 주력하자며, 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다.</p> <p>5. 홍보 본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며, 경기방송·수원방송, 중부경인·경기일보 등의 언론매체와 연계하자고 함</p> <p>6. 기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수립 및 토론회 일정을 앞당기자고 함 - 선거 후 선거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함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의제제출

목 차

1.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2. 사회복지 예산의 현실화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4. 경기도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5.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제기능
6. 경기도 자원봉사 인프라 및 통합시스템 구축
7. 분야별 정책과제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 필요성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소와 고령화 및 저 출산문제 등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특히 재정분권화로 인한 복지권한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양극화 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도 많은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사회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문제 중 지역적으로 형평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복지시설 (기관)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1. 보육시설

구 분	2004		2003		2002		2001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합 계	7,133	201,214	6,228	184,368	5,572	164,364	4,835	152,074
국공립	235	17,500	227	16,786	225	16,332	222	16,284
민 간 (법인,개인포함)	3,359	140,436	3,114	129,717	2,876	119,451	2,658	111,592
직 장	51	2,984	43	2,132	30	1,551	26	1,388
가 정	3,488	40,294	2,844	35,733	2,441	27,030	1,929	22,810

민간보육시설의 증가(245개소)에 비해 국공립보육시설(8개소)로 다소 부족하다. 경기도에 7세 이하의 아동수가 2005년 12월31일 기준 1,100,026명(2006 경기도 통계연보)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전체 201,214명으로 18.29%만 이용하게 되고, 이중 민간보육시설의 아동수가 140,436명으로 12.77%,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는 17,500명으로 1.59%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가 부족하다.

- 대 안 : 국공립보육시설의 단계별 확충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단계적으로 10%이상 증가가 필요하며 향후 전체 아동수 대비 50% 정도의 수준까지 향상이 요구된다.

2. 노인복지시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시설수요 충족률이 기초보장수급자인 노인의 경우는 96% 수준에 이르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서민층의 경우에는 10% 가량에 불과한 수준임. 특히 경기도는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노인인구수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인주거의료시설을 2006년부터 매 2년간 65개소 확대를 통해 2015년까지 337개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인요양시설의 신축을 기피하여 요양시설 확충 및 운영상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현재 기준이 되고 있는 중증도 및 수발상태별 장애발생율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연도별 요보호대상 노인수를 추정해보면 아래 <표 3> 와 같음.

연도별 경기도 내 요양보호대상 노인 수 추정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전국 65세 이상 노인수*	4,365,963	4,573,965	4,792,429	5,148,224	5,302,095	5,476,782	5,690,731	5,917,615	6,345,400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수*	709,953**	781,900	831,323	916,160	954,399	998,939	1,050,297	1,103,663	1,206,377
계(요양 필요자)**	105,284	115,953	123,283	135,864	141,535	148,141	155,756	163,671	178,904
최 중 증 (1.68%)***	11,927	13,135	13,966	15,391	16,033	16,782	17,644	18,541	20,267
중 증 (3.24%)***	23,002	25,333	26,934	29,683	30,922	32,365	34,029	35,758	39,086
경 증 (4.98%)***	35,355	38,938	41,399	45,624	47,529	49,747	52,304	54,962	60,077
치매(경증) (4.93%)***	35,000	38,547	40,984	45,166	47,051	49,247	51,779	54,410	59,474

* : 통계청(2002),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 : 경기도 내부자료(2004. 12. 31 현재)

*** :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 수에 요양 필요자 %를 곱하여 얻은 값

경기도 노인인구는 709,953명으로 이중 2006년도 추정 요보호 대상자 노인인구인 115,958명의 노인이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전국 노인시설충족률 1.2%에 비교하면 8,500명정도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 대안 : 노인복지시설 단계별 확충

경기도 노인주거의료요양시설 확충 (경기도 노인인구 대비 30% 확보)

소규모 복지시설(노인주단지보호시설 및 그룹홈, 노인복지관) 시군별 1개소 이상 확대설치

3. 장애인복지시설

구 분	2005	2004	2003	2002	2001
장애인 등록	331,364	305,037	273,382	237,285	202,565
장애인복지시설	50	46	44	37	34
입소인원	3,443	3,335	3,237	3,082	2,884
%	1.04%	1.09%	1.18%	1.30%	1.42%

※ 2005년통계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관련 현황(2005)

※ 2004년 이하 통계 : 경기도 통계연보 (2005)

현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331,364명이며, 장애인생활시설 50개에 수용인원 3,443명으로 경기도 등록장애인의 1.0% 수준에서 수용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1년부터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등이 확대되어 온 것이 있다지만 기본적인 장애인 요양시설은 각 시군별 1개소 이상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장애인 이용시설인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그룹홈 등 다양한 시설의 확충 또는 분점 및 소규모 복지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기본 부족시설을 대처할 수 있음.

- 대 안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경기도 장애인요양시설 확충 (경기도 장애인인구 대비 30% 확보)

소규모 복지시설(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및 그룹홈, 장애인복지관) 시군별 1개소 이상 확대설치

4. 지역사회복지관 시군별 1개소 이상 설치 (인구 100,000명당 1개소 확보)

경기도의 지역사회복지관 분포를 보면 18개 시군에 5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5개소 이상 되는 지역이 부천, 시흥, 고양, 성남이며, 부천이 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아직 1개소도 설치되지 못한 지역이 13개 시군에 달하고 있다. 최소한 각 지역별로 1개소 이상의 복지관 확보가 필요하며, 수원, 안양, 등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복지관 설치가 요구됨.

사회복지 예산의 현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광역자치단체(道) 재정자립도 비교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 지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 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단위 : %)

	평균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003	39.4	21.7	75.8	33.4	22.0	14.0	18.0	33.1	24.3	25.6
2004	41.3	24.2	78.0	34.1	22.3	14.2	18.9	29.1	26.2	26.2
2005	36.6	22.4	70.3	29.8	22.4	11.9	17.9	30.3	29.0	25.2

※ 자료 : 행정자치부 재정고(<http://lofin.mogaha.go.kr>)

○ 광역자치단체(道)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부담 지방세 수입을 인구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

(단위 : 천원)

	평균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003	320	208	491	273	178	155	164	448	207	192
2004	354	235	548	276	200	160	174	440	242	207
2005	339	270	485	278	211	160	193	434	274	225

※ 자료 : 행정자치부 재정고(<http://lofin.mogaha.go.kr>)

○ 광역자치단체(道)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총계 예산을 인구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으로, 지방예산의 세출총액으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보는 절대액을 말한다.

(단위 : 천원)

	평균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003	783	912	655	798	724	1,040	835	1,369	900	793
2004	884	1,004	723	808	809	1,133	875	1,391	984	838
2005	897	1,253	677	941	877	1,291	1,033	1,511	1,052	883

※ 자료 : 행정자치부 재정고(<http://lofin.mogaha.go.kr>)

○ 광역자치단체(道) 일반회계 대비 사회보장비율

(단위 : %)

	평균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003	14.1	15.0	9.8	13.3	16.6	17.8	20.0	12.7	16.6	16.4
2004	14.3	14.6	10.0	12.7	17.0	17.6	21.7	12.7	16.8	17.5
2005	14.6	11.3	11.8	14.6	15.4	17.3	20.8	14.1	16.0	16.5

※ 자료 : 9개 광역자치단체(道) 홈페이지

주 : 당초예산 기준, 사회보장비란 관(2300) 사회보장비를 뜻함.

○ 광역자치단체(道) 1인당 사회보장지출비

(단위 : 천원)

	평균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003	137	137	64	106	120	186	167	174	149	130
2004	151	147	72	103	138	200	190	195	165	147
2005	163	141	80	137	135	224	215	224	168	146

※ 자료 : 9개 광역자치단체(道) 홈페이지

주 : 당초예산 기준

○ 경기도 사회보장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합계	7,003,993	100.0	7,835,440	100.0	7,545,966	100
사회보장	592,884	8.5	654,268	8.4	778,274	10.3
사회복지	8,167	0.1	14,120	0.2	8,930	0.1
저소득주민보호	344,580	4.9	348,676	4.4	399,030	5.3
장애인복지	68,325	1.0	77,305	1.0	82,345	1.1
여성정책	10,063	0.1	8,513	0.1	11,114	0.1
가정복지	137,187	2.0	179,396	2.3	245,011	3.2
유아복지	-	-	-	-	-	-
청소년복지	16,399	0.2	18,975	0.2	24,501	0.3
여성회관운영	2,387	0	1,787	0	1,821	0
북부여성회관운영	2,431	0	2,178	0	1,921	0
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	3,343	0	3,314	0	3,598	0
보건관리	45,974	0.7	54,627	0.7	65,845	0.9

○ 경기도 사회복지 사업예산 각 분야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

(단위 : %)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보조사업	자체사업	보조사업	자체사업	보조사업	자체사업
총 합 계	89.2	10.8	87.2	12.8	85.5	14.5
사회복지	86.3	13.7	44.1	55.9	75.7	24.3
저소득주민보호	99.9	0.1	99.9	0.1	98.8	0.1
장애인복지	74.9	25.1	73.4	26.6	81.8	18.2
여성정책	53.2	46.8	75.2	24.8	75.7	24.3
가정복지	82.4	17.6	78.7	21.3	77.8	22.2
청소년복지	77.3	22.7	81.2	18.8	59.2	40.8
여성회관운영	0.0	100.0	0.0	100.0	0.0	100.0
북부여성회관운영	0.0	100.0	0.0	100.0	0.0	100.0
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	0.0	100.0	0.0	100.0	0.0	100.0
보건관리	79.6	20.4	82.3	17.7	61.0	39.0

○ 경기도 예산 현황

- 지속적이고 안정적 세입구조로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안정적인 구조임
- 재정자립도는 지난 3년간 전국의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음
- 주민 1인당 지방세는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음
-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은 가장 낮음. 즉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음.

○ 경기도 사회복지관련 예산 문제점

- 일반회계 대비 사회보장비율과 1인당 사회보장지출비가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서 가장 낮음.
- 경기도 사회보장예산의 대부분은 공공부조 중심의 예산임. 즉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보편적 복지보다 극히 제한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회복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률은 거의 10%에 그치고 있음.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경기도의 사회복지예산이 공공부조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공공부조 예산은 그 특성상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되기 때문임.

□ 제언

- 사회복지예산을 현 11.8%에서 20%선까지 상향조정해야함.
- 공공부조중심의 사회복지계획에서 탈피하여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해야함.
- 사회복지 예산의 자체사업률을 일반회계의 전체사업예산비율에 맞게 50%선으로 상향조정해야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 급여 수준 및 수당의 현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임금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의 방기 및 봉사와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타휴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비해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아래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기본급이 각각 다르게 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근무하는 기관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평균임금이 서로 다르고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2> 처럼 수당 또한 사회복지사의 경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은 물론 시간외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에 대한 보상규정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표1>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의 보수 비교

(단위 : 원)

직종	교사	공무원 (9급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기준	2006년도 공무원보수규정	2006년도 공무원보수규정	2006년 수원시보수규정	2006년종사자수당 가이드라인
1호봉	891,400	792,900	726,000	771,000

※자료: 국회의원 고경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공청회 자료집, 2006

<표2>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연봉(1호봉 기준) 비교

(단위 : 원)

직종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연봉 총액	23,437,280	20,724,700	(수원시) 16,102,200 (타지역) 16,000,000	15,918,000

※자료: 국회의원 고경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공청회 자료집, 2006

〈표3〉 사회복지사, 교사,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 비교

직종	교 사			공무원 (9급 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생활시설 사회복지사	
	상여 수당	기말 정근 장기근속		상여 수당	기말 정근 장기근속	상여 수당	기말 정근	상여 수당	기말 정근
수당종류	가족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²⁾			육아휴직수당					
	연구업무수당					직무수당		생활복지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급량비		급식비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자격수당			
	교통보조비			교통보조비		교통비		교통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효도휴가비			
	가계지원비			가계지원비		가계안정지원 가계보조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대민봉사활동비		복지수당			
총 계	14 종류		14 종류		9 종류		7종류		

※자료: 국회의원 고경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자료집, 2006 재구성

○ 제안사항

- 사회복지종사자의 기본급을 공무원·교사와 같은 동등한 대우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을 공무원·교사 등 동등학력으로 동일한 공익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즉,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일반 타직종과 동등하게 개선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 기본급 동결 전제)
- 실질적 수당의 현실화
 - ▷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월차 휴가 등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예산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 수당 동결 전제)
- 도서벽지 사회복지종사자 근무수당 제정
 - ▷ 도시지역을 제외한 시·군지역의 열악한 사회복지 환경개선과 빈번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이직을 방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서벽지 사회복지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제정되어야 한다.

1) 중고생자녀의 학비, 분기별
2) 40만원/ 월

2.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 일원화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라는 동일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은 기본급(봉급)이 각각 다르게 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근무하는 기관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상이한 차별적 구조임.
- 또한 유형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경력인정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기관경력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유형이 다른 기관으로 전직하게 되는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됨.

<표 4> 복지수당 지급현황

(단위: 천원)

시설의 종류		경기		인천			서울	
		5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사회복지관		10	15	15	15	20	135	190
노 인	노인종합복지관	10	15	15	15	20	135	190
	노인양로시설	15	20	15	20	25	200	250
	노인요양시설	15	20	25	30	30	200	250
	실비양로,요양	10	15	-	-	-	-	-
	제가노인복지시설	10	15	15	15	20	135	190
장 애 인	장애인복지관	10	15	15	15	20	135	190
	장애인생활시설	20	25	15	20	20(16호봉이상25)	240	29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	25	15	20	20(16호봉이상25)	240	290
	제가장애인복지시설	단기	10	15	15	20	20(16호봉이상25)	240
주간		10	15	15	20	20(16호봉이상25)	135 240	190 290
아동복지시설		15	20	15	20	20(16호봉이상25)	240	290
자활후견기관							135	190

○ 제안사항

- 사회복지 직종(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수준, 수당종류의 통일 및 동일임금 적용이 필요함.

3.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배치(근무여건 개선 및 적정 근로시간 준수)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복지현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그 피해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수혜대상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표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주일간 근무시간

		빈도(명)	백분율(%)
항목	44시간 이하	1,948명	34.3
	45-50시간	1,745명	30.7
	51-60시간	1,282명	22.6
	61-90시간	494명	8.7
	91-168시간	207명	3.6
	합 계	5,676명	100.0

※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자료, 2001

- 사회복지사의 47.8%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2.85시간으로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65.6%가 법정 근무시간 44시간을 크게 초과한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
- 아래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65.2%가 주6일 근무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격주 휴무와 상근까지 합하면 91.7%가 정부의 주 5일제 근무와는 상관없는 업무 형태를 보임.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욕구가 있는 한 토·일요일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본적 인력 편성은 당연하다.

〈표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주일간 근무일수

		빈도(명)	백분율(%)
항목	주 6일	3,841	65.2
	격주 휴무	908	15.4
	상 근	653	11.1
	주 5일	274	4.7
	숙식·격일	49	0.8
	기 타	162	2.8
	합 계	5,887명	100.0

※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1

○ 제안 사항

- 사회복지 제공 기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인력 배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의 적정인력 배치로 인한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질적 서비스 제공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실태조사³⁾에 의하여 서울시의 사회복지관의 적정 소요인력은 각 사업 영역별 인력의 직급을 조직의 최소 단위인 팀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 팀별로 과(팀)장급 1명을 배치하도록 하여 사회복지관의 적정인력으로 총 21명을 책정함.

	06' 현재	07'	08'	09'
근무시간	54시간	50시간	44시간	44시간
인력기준	15명	17명	19명	21명

4. 사회복지사 재교육 위한 예산 배정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예산지원 등 많은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능력과 자질향상임.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효과적인 능력 개발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은 기대하기 어려움.
-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다양한 교육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와 취약한 복리후생제도로 인하여 우수한 인력의 유입은 고사하고 뜻을 가지고 사회복지계에 투신한 많은 사람을 결국에는 떠나보내고 있는 현실임.

○ 개선방안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분야별·단계별 보수교육 의무화제도 도입
 - ▷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연간 보수교육 과정 및 시간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 사회복지사, 재활교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등 분야별 종사자의 전문교육을 등급별로 시행하여 매년 상위 등급으로 이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 시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함.
 - ▷ 의무교육과정 및 시간을 수료하지 못했을 경우 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강제적 제도 도입이 필요함.

3) 신용규, 2005 서울지역사회복지관 실태조사 분석 및 연구활용 사례, 2005

경기도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 공공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공무원) 확대

우리나라는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 도입 이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실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많은 개편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단위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과 인력 등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1. 조직현황

경기도 보건복지관련 조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본청과 2청으로 이원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市政)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동분야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둘째, 보건복지관련 업무가 본청은 2개 국, 2청은 3개 국·실에 분산되어 있다.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경기도 인구를 감안하여 1개국에서 담당하기에는 너무 비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되었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보건복지업무가 연계,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 특히 2청의 경우는 보건복지업무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업무와 혼합하여 문화복지국과 환경보건국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어 본청과의 관계에서도 비효율적 측면과 비전문성 측면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업무분장에 근거하여 본청은 2개국으로, 2청은 3개국·실로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업무조정기능에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없지않다. 예를 들면, 가족복지업무가 저소득층 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보건업무, 질병관리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중요하지만 현재의 조직구조에서는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가족정책, 여성복지정책을 포함한 전체보건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별도로 존재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2. 인력현황

사회복지인력은 서비스를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현황을 전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대비 현원비율은 98.2%로 전국의 97.7%에 비해서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이 85.4%, 2급 12.4%, 3급이 2.2%로 전국에 비해 1급보다 2급, 3급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이 약간 높아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질이 전국의 수준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경기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2004년도기준>

(단위:명,%)

구 분	정원	현원	정원대비 현원비율	사회복지사 자격(%)		
				1급	2급	3급
경기도	973	955	98.2	816 (85.4)	118 (12.4)	21 (2.2)
전 국	7,144	6,977	97.7	6,127 (87.8)	751 (10.8)	99 (1.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확충되는 추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과다 및 복지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과 사기가 저하되고 전문직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이 인력배치, 업무부여, 업무분담체계마련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복지제도가 확대될수록 인력활용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의 효과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양적인 충원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와 함께 보수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함께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의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

3. 개선방안

- 경기도 전담공무원 정원 1000명에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 2배 이상 확충하여 전담공무원 1인 당 150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점차적으로 75가구에 접근하도록 함 (일본의 경우 1인 당 67가구)
-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과 민관협력구축

1.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05년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대다수의 시군이 아직까지 실질적인 논의단위인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도 정기적인 회의가 아닌 위원위촉이나 욕구조사, 자원조사 등의 한정된 안건에 의해 회의가 소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유급간사와 예산확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이에 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실질적인 지역복지자원의 총량을 확대하고 민민과 민관협력의 실질적인 토대가 구축되도록 함.

2. 개선방안

- 지역복지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확대
- 월1회 협의체 담당자 정기회의개최로 지역복지현안 해결에 대한 의견공유
- 각 지역 협의체별로 모니터링을 하여 활성화되도록 독려
- 매년 경기도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성과와 과제발간

경기도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제기능

1. 필요성

- 경기도민의 복지의식 함양 및 참여 증진
-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대
-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
-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 사회복지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 종합정보 제공

2. 주요기능

- 보건복지 종사자 교육 및 훈련 (경기도사회복지인력개발원)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보수교육 정례화
 - 사회복지종사자의 정기교육 기회 확대
 - 사회복지사협회, 직능협회 등 다양한 단체간의 연계를 통한 보수교육 실시
 -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
 - 세미나, 토론회, 소모임 등 교육장대여로 각종모임 지원
- 사회복지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경기도사회복지연구소)
 - 다양한 복지욕구파악 및 정책대안 마련
 -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욕구조사
- 사회복지서비스 평가 (사회복지시설(기관)평가위원회)
 - 현행 3년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기관) 평가체계 개편
 - 경기도 독자적인 평가를 통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개발
 - 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및 다양한 혜택 제공
 - 체계적인 과정평가도입을 통한 현실성 있는 평가체계 구축
- 복지정보망 구축 및 정보제공 (경기도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현황의 실시간 정보제공
 - 복지 정보수혜자 및 제공자간 긴밀한 연계 서비스 제공
 - 도내 사회복지 인력 현황
- 사회복지전문도서관, 북카페 운영(경기도사회복지전문도서관)
 - 직능별 사회복지 도서 및 각종 논문, 영상자료 확보
 - 실질적인 DB구축 및 북카페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이해 증진
 - 도내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증진 및 조사·연구 활동 보조
- 복지기기(장애인, 노인, 보장구 등) 전시 및 체험, 교육공간
 - ONE-STOP 체험코스 및 전시공간 마련
 - 상설 자원봉사 교육장 운영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사회복지시설 생산물품 전시, 판매장소 마련

3. 문제점

- 설문조사 방식에 대한 표본설정 및 객관성 확보가 미흡하였으며, 기존조직과 평가를 제외한 상당부분 중복성 제기는 물론 이러한 기존의 민간조직(경기개발연구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및 다양한 유연조직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 구체적인 민간 영역에서의 전달체계 개선을 제시하지 못함.
- 센터의 조직규모 및 역할, 기능면에서 조사연구 및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보조금지급 적정성 심사, 수탁자 선정 및 재위탁심사, 정기 및 수사회계감사 등 주요업무에 대한 자칫 준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오해소지가 있음
- 앞으로 센터가 설립되기까지는 민관의 의사소통이 중요할 것이며, 센터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합한 모델이 될수 있도록 사회복지관계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임.

4. 전망과 과제

오늘날 우리사회의 세 주체(sectors)인 정부·시민·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들과 서비스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설립되는 경기도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음.

- 사회복지지관관련 서비스가 ONE-STOP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과 공적부조가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함.
- 일반시민, 사회복지관계자, 사회복지전문가, 지역사회 기업,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촉발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설립초기부터 철저히 계획하여 균형감각 있는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설립과정의 단계별로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경기도 사회복지 다변화 및 전문화를 위한 다기능센터로써 역할수행이 필요하며 운영형태의 전문성제고가 요구됨.
- 사회복지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흐름이 원활하도록 조정하고 발전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과 제도화를 위해 존재하는 지원센터가 되어야 함.

사회복지종사자 교육훈련활성화

□ 필요성

- 경기도내 교육사업의 경우 광역단위 보건복지 종사자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이 없어 도내 종사자의 경우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단체의 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임.
- 대학의 복수전공 교육체제로 사회복지 전공과목의 이수가 약화되어 사회 복지 실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 현장·실천교육이 필요하나 기관에서는 인력수급에 급급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참여정부 들어서 지방분권화 및 각종 제도, 정책의 도입에 따른 신규 보건복지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은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환경변화에 따른 기존직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어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경기도 내 380여개 민간 사회복지시설·단체의 8,300여명 종사자와 1,200여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보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교육 설치가 요구됨

□ 교육사업현황 비교(2005년도말 기준)

구분	전 국	경기도	시 군
교육 사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각 직능 협의회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전문교육기관없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각 직능 협의회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없음

구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인력	25명 (원장1명, 교수7명, 일반직 17명)	복지사업부, 부장 외 2인 <겸직2인>	부장 외 4인 <겸직 4인>
시설	1,250평 (강의실10실, 분임토의실12실, 실험실습실)	한국사회복지회관	없음 (교육별 시설임대)
교육 대상	보건복지분야 공공 및 민간인력	전국 사회복지분야 민간인력	경기도 사회복지분야 민간인력
교육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의 위탁교육	민간이나 시설에서 직접신청	민간이나 시설에서 직접신청

교육 과정	보건분야 53개 과정 (교육일수327일, 교육횟수70회, 총 인원3,278명)	사회복지행정실무과정 법인·시설 운영자 직무능력과정 리더쉽과정	직무능력향상과정 프리젠테이션교육 건강관리교육
	복지분야 50개 과정 (교육일수220일, 교육횟수90회, 총 인원4,330명)	법인·시설 회계실무과정 사회복지법인 설치·운영과정 기획능력 개발과정	식품위생교육 사회조사통계교육 홈페이지운영 및 활용교육
	전산과정 2개 과정 (교육일수10일, 교육횟수2회, 총인 원40명)	자원개발과정 홍보실무과정 창의력개발 등	홍보실무교육 프로포절 작성과정 엑셀활용교육 등
		<u>총17개과정 49회 5,440명</u>	<u>총14회 640명</u>

□ 경기도 직능별 교육현황비교표(2005년말기준)

구분	교육내용	대상자	예산
협의회	직무능력향상과정 프리젠테이션교육 건강관리교육 식품위생교육 사회조사통계교육 홈페이지운영 및 활용교육 홍보실무교육 프로포절 작성과정 엑셀활용교육 등 총14회 640명	경기도사회복지종사자	도예산 + 자부담 (참가비)
	인증요원양성교육	사회복지기관(시설) 자원봉사담당실무자	도예산
	자원봉사관리자교육		
	자원봉사자카드리더기활용교육	시설(기관)의 자원봉사자	
아동복지연합회	부모교육	아동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자부담(참가비)
장애인 시설협회	직무능력개발	경기도장애인시설종사자	모금회
	신고전환시설종사자교육		모금회
	시설장애인 재활프로그램교육		도예산

노인복지시설연합회	노인상담원양성교육	일반	모금회+자부담(참가비)
	노인복지기관실무자상담교육	실무자	"
	자살예방교육	노인 및 노인가족	모금회
	직무기본교육 케어직무교육(초급, 중급) 행정직무교육(초급, 중급) 캠코더교육 디카교육	노인복지기관 실무자	자부담(참가비)
	노인동료상담원양성교육	60세이상 노인	
복지관협회	종사자 세미나	경기도사회복지관종사자	도예산+자부담(참가비)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회원	모금회+자부담

□ 제언

○ 위 현황에서 보다시피 도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은 협의회중심이며 각 직능은 자부담 및 참가비로 자체교육을 하는 실정이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한곳으로 집약하여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실무자별로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이 확대 요구됨.

○ 사회복지종사자가 아닌 일반도민들에 대한 교육은 협의회외 자원봉사자교육과 노인연합회의 교육사업 일부만 있어서 종사자뿐만 아니라 도민들에 대한 사회복지교육의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경기도 자원봉사 인프라 및 통합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시민참여의 기초이며 이를 통한 사회연대의식의 강화와 지역사회 경쟁력의 제고의 효과에 주목할 때 관리의 전문성과 더불어 주민접근성의 강화, 기본적 인프라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함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역량을 강화할 데 대한 기반 구축에 있어 이미 부처별로 존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 부처별·지역별 자원봉사 관리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는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더불어 자원봉사자 전담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중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표1>부처별 자원봉사관리사업 현황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보건복지부 복지자원과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과	여성부 협력지원과
광역시도	시민협력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센터명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정보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
설치단위 및 설치수	시도16개소 시군구 234개소	중앙/시도 17개	중앙/시도 17개 시군구 4개소	시군구 156개
인증관리프로그램	미 실시 (시군구센터별 실시) 자원봉사카드시스템	인증관리DB시스템, 자원봉사카드시스템	청소년마일리지, 터전인증관리사업 DB시스템	미 실시 (시군구센터별 실시)
보상	센터별 인증서발급, 상장 및 상패수여, 집 포할인, 공공시설 이 용할인, 상해보험	실적인증서발급, 배지 증정, 각종 포상추천, 자원봉사카드이용할 인, 상해보험	개인별 마일리지 증명 서발급, 가맹점 업소 할인혜택, 모바일서비 스(SMS)	센터별 인증서발급 및 인센티브제공, 우수자 원봉사자 수상
법적근거	지자체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 항, 사회복지인증관리규 정(2001. 10. 보건복지부 승인)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4조 청소년활동진 흥법 제65조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령 제35조
사회복지시설 (기관)	자원봉사관리, 실적 입력(송부)	인증센터 지정(219개소), 인증요원(467명)이 자원봉 사관리 및 실적 입력	청소년봉사활동 터전인 증제, 청소년봉사자 지 도, 실적입력	자원봉사활동 관리, 보고
※ 기타 : 지방자치단체 별도운영 - 경기도(행정자치부와 별도의 시스템 사용) - 안양시, 시흥시(마일리지제도 별도운영)				

□ 제안

- 온라인(on-line) 인프라로 인터넷기반 자원의 적극적인 참여보장
- 기본적 자원봉사접수 및 안내, 시간관리를 진행할 자체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자원봉사 접근성을 높인다
- 인력변화 및 이직률이 증가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부족한 시설(기관)의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충이 요구됨.
- 경기도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동 통일화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위하여 시·군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담관리기구 설치요구.
- 사회적 인정과 보상
 - 경력 인정제 강화(공직임용, 취업, 진학, 승진 등에 혜택 부여)
 - 인센티브제공(자원봉사자를 위한 디스카운트샵 및 문화시설 입장료감면 등)
- 경기도의 자원봉사관리의 통합화.
 - 전산시스템의 통합
 - 자원봉사 관리의 통합
 - 충분한 조사연구 및 협의조정

5.31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 대책 실무위원 명단

기관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실장	정용수	255-1546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박상용	225-6088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사무국장	김선구	714-6433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전상원	245-7553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김종태	213-8551
경기도사회복지행정동우회		박재현	017-369-1311
경기도아동복지시설연합회	실장	한경희	252-3060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관장	최영	403-0078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	조석환	256-6073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사무국장	이영재	235-2114
경기도청소년상담센터	실장	유순덕	237-1318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허윤범	215-4399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	유유미	232-0175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부장	박일규	213-8551